

전주강림교회 직원(항존직) 선택 내규

제 1조 목적

본 내규는 대한예수교장로회(통합) 전주강림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직원(항존직)을 선택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 2조 목사

1. 6년마다 제직회에서 신임투표를 실시하며, 신임투표에 과반수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당회와 협의하여 사임한다.
2. 시무 정년은 65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.

제 3조 장로

1. 본 교회 장로는 시무장로, 은퇴장로, 봉사장로로 구별하고 그 시무 임기와 봉사는 다음과 같이 한다.
 - 1) 시무장로
 - (1) 시무장로 시무의 정년은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.
 - (2) 시무 기간은 10년 단임으로 하고 잔여기간은 봉사장로가 된다.
 - 2) 은퇴장로
은퇴장로는 본 교회에서 시무장로로 봉사하다가 퇴임한 장로이며, 당회와 제직회의 연권 회원이 된다.
 - 3) 봉사장로
 - (1) 봉사장로는 시무 임기가 끝난 장로가 되며, 그 봉사는 시무 장로의 정년인 70세가 되는 연말까지로 한다.
 - (2) 봉사장로는 각 부서에서 활동하며 제직회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.
 - (3) 타교회 장로가 본 교회에 등록하고 1년이 지나면, 당회에서 봉사장로로 임명할 수 있다.
 - (4) 봉사장로는 당회의 요청 시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2. 장로의 자격

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고, 무흠 세례교인(입교인)으로 7년을 경과하고, 40세 이상 된 자(헌법, 제 2편 정치 제 6장 장로 제 40조)로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 된 자라야 한다.

- 1) 집사 또는 권사 3년 이상 된 자
- 2) 교회에 등록된 지 3년 이상 된 자
- 3) 주일예배, 구역말씀예배, 수요성경학교, 새벽기도회 등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
- 4) 십일조 및 봉헌 생활에 모범을 보이는 자

- 5) 전 가족이 교회에 출석하며 모범적인 가정생활을 실천하고 있는 자
- 6)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
- 7) 본 교회에서 기관 혹은 위원회에 소속되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자
- 8) 자신의 의견보다는 공동체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르는 자

3. 시무 사임과 사직(헌법 제 2편 정치 제 43조)

- 1) 자의 사임은 장로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시무를 사임할 수 있다.
- 2) 권고 사임은 교인의 과반수가 시무를 원치 않으면 당회의 결의로 권고 사임케 한다.
- 3) 장로가 범법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할 줄 알면 자의 사직할 수 있다.

제 4조 집사, 권사

1. 집사, 권사 시무 정년은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.
2. 집사, 권사의 자격
 - 1) 집사
교우들의 신임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지혜의 분별력이 있고, 무흠 세례교인(입교인)으로 5년을 경과하고, 35세 이상 된 남자로서 디모데전서 3장 8~10절에 해당된 자라야 한다.(헌법 제 2편 정치 제 8장 집사, 권사 제 51조)
 - 2) 권사
권사의 자격은 무흠 세례교인(입교인)으로 5년을 경과하고, 35세 이상 된 여자로서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는 자라야 한다.(헌법 제 2편 정치 제 8장 집사, 권사 제 53조)

제 5조 타 교회에서 온 교인의 직원 자격

1. 타 교회에서 온 장로, 집사와 권사는 이명증서가 접수되고, 1년이 지난 자단, 이명증서가 접수되지 않을 때에는 등록된 후 2년이 경과된 자

제 6조 직원의 선택

1. 장로의 선택은 (당회의 결의 후 노회의 허락을 받아) 당회가 제 3조 2항에 적합한가를 확인한 후 당회의 공천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.(헌법 제 2편 정치 제 6장 장로 제 41조)
2. 집사, 권사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.(헌법 제 2편 정치 제 8장 집사, 권사 제 54조)
3. 직원 선택에 필요한 사항은 당회가 시행세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 7조 직원(항존직)의 임직

1. 장로

피선된 후 6개월 이상 당회 아래서 교육을 받고, 총회 교육부가 실시한 성경통신과(신약, 구약 모두)를 졸업한 후 장로고시에 합격하여야 하며 1년 이내에 임직하여야 한다.

2. 집사, 권사

피선된 후 3개월 이상 당회 아래서 교육을 받고, 당회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임직한다.(헌법 제 2편 정치 제 8장 집사, 권사 제 55조)

제 8조 직원(항존직)의 의무

선택된 모든 직원(항존직)은 주일예배와 구역말씀예배, 수요성경학교, 제직회, 새벽기도회에 출석을 잘하고,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고, 교회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여야 한다.

부 칙

1. 이 내규는 제직회가 승인한 2002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내규는 제직회가 승인한 201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3. 이 내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예수교장로회(통합) 헌법에 따른다.